



제254회 임시회  
2006. 10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□ 다음은,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“회기수당”에서 “의정활동비”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서의 용어의 정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“회기수당”에서 “의정활동비”로 변경하고
- 안 제9조제2항의 “다음 각 호의 1”을 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변경하고
- 제12조제2항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”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2006년 2월 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

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